

‘21.05.28’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청약 신청 자격요건

-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성년자인 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부적격 사유 예시

-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 정당 당첨자(미계약자, 부적격자 포함) 및 예비입주자 중 추가계약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 주택소유)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일(21년08월19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무순위 청약에 같은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자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자 등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세부 일정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무순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정	8월 24일(화) ~ 8월 25일(수)	8월 30일(월)	9월 01일(수) ~ 9월 05일(일)	9월 06일(월) ~ 9월 07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추첨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ngdo-aristaprime.com/)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	

무순위 당첨자 제출서류 안내 (모든 증빙서류는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일(2021.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비고
	필수	해당자			
제출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고 해외 체류기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상기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발급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1.08.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급대상

단위: ㎡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잔여 세대 수	잔여 세대 등 호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소계					동	호수
민영 주택	41.1000A	41A	41.10	21.35	62.45	37.03	99.48	20.47	21	101	301, 401, 406, 407, 411, 412, 508, 509, 511, 601, 602, 604, 703, 704, 706, 801, 804, 807, 808, 812, 905
	82.5300B	82B	82.53	42.28	124.81	74.27	199.08	41.11	2		1001, 1006
	77.0700C	77C	77.07	40.36	117.43	69.34	186.77	38.39	1		1005
	80.3000D	80D	80.30	41.85	122.15	72.25	194.40	40.00	1		1004
	합계									25	-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안내 (계약금 10%)

단위: 천원

층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0층				794,400 (80D)	763,700 (77C)	811,800 (82B)						
9층					390,400							
8층	343,000			378,000			386,000	386,000				339,000
7층			373,500	373,500		382,500						
6층	333,100	368,900		368,900								
5층								373,400	380,400		380,400	
4층	325,100					369,900	369,900				376,800	321,100
3층	337,000											

- 인터넷·모바일뱅킹 입금 후 계약서가 발급됩니다.(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계약금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이름을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ex.101동 301호의경우 = 1010301홍길동)
- 아리스타 프라임 계약금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오니 착오없이 해당계좌에 각각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 분리세대 및 서류 미비자는 소명완료시까지 공급계약서 불출이 불가합니다.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미비자는 추가제출기간에 보완 후 계약서 불출 가능합니다.

아리스타 프라임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415-910027-21904
 (주)하나자산신탁

발코니확장,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406-910018-59104
 대양종합건설(주)